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An Essay on the Category and Concept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through Damage Status

저자 (Authors)	박정애 Park, Jung Ae
출처 (Source)	사학연구 (120) , 2015.12, 167-203(37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20) , 2015.12, 167-203(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78894
APA Style	박정애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120), 167-203
이용정보 (Accessed)	동북아역사재단 211.250.145.*** 2021/03/11 15: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박 정 애
(동국대학교)

머리말

I. 일본군'위안부' 개념과 범주를 둘러싼 논의 지형

1. 피해자 수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범주
2. 피해자 정의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II. 일본군의 전쟁 수행과 병사에 대한 '성욕' 통제

1. 일본병사의 군기 해이와 일본군의 대응
2. 일본군의 '성욕' 통제와 일본군'위안부'

맺음말

● 투고일: 2015. 11. 18. ● 심사일: 2015. 11. 19. ● 게재확정일: 2015. 12. 7.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론적으로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제기되고 그 해결 노력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는 각각의 연구자, 활동가, 관계기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자국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공문서를 통해 재구성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상에 치우치거나 연구를 앞질러서 해결운동을 전개해가는 연구나 운동의 특성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비롯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억압적으로 군 조직을 유지하면서 병사들의 군기 불량이라는 문제에 처한 일본군은 병사들의 ‘성욕’ 문제를 과잉해석하고 그 해소 문제에 골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대응방식은 세 가지였는데 새롭게 위안소를 설치하거나 점령지에서 병사들이 저지르는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일본의 공권력이 관리하는 성매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 중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제도’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비가시화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일본군이 자행한 전시 성범죄의 스펙트럼을 보여줌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성적 도구화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일본정부나 군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시행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 보편적인 성노예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들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따지면서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군 성노예, 전시 성폭력, 일본군 성범죄, 성매매 관리제도

머리말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방향은 대략 두 가지로 가닥이 잡혀 있는 듯하다. 과거 국가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보편적인 전 세계 전쟁과 여성인권의 문제로서 이슈화하는 것이다. 전자로는 일본에게 끊임없이 법적인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후자로는 전 세계적인 연대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전쟁 및 무력갈등의 여성폭력 문제에 문제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현재 한국의 운동단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전쟁과 여성인권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의 해결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가 아베담화 이후 ‘위안부’ 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¹⁾. 논의는 주로 최근 한일 정부의 동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흐름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나는, 이 날의 논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공유한 문제의 본질적인 성격을 환기하는 일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군‘위안부’제도라는 과거에 실재했던 사건을 통해 현재의 전쟁과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그 안에 겹겹이 얹혀 있는 특수한 역사적 성격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지구적인 인권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이 주최했으며, 제목은 <아베 담화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전략 토론회>였다. 발제는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아베 담화」를 읽는다」를, 양정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동향과 과제」를,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향후 한국정부에 대한 대응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를 맡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식민지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날의 발표자였던 양징자 대표가 언급했듯이 내셔널리즘에 포섭되어 ‘위안부’ 문제를 해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일은 지양해야겠지만, 민족 문제를 건어버리고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었다. 따라서 ‘조직적 체계적’이라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국가 관리적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일본 본국 및 식민지 조선, 타이완 출신의 여성들이 우선적인 ‘위안부’ 동원대상이 되었다면,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양징자 대표는 식민지 출신 ‘위안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위안부’문제에 해당되는 얘기일 뿐이며, ‘위안부’ 전체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제도로서의 ‘위안부’ 범주와 전체 ‘위안부’ 범주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인식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위안부’라는 단어를 채우고 있는 의미가 현재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일본군‘위안부’ 문제 논의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는 애초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해결 운동 전략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 피해실태로부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성격을 검토해보면서, 연구자나 활동가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정의할 때 현재 세계 연대의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실재했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면서 그 역사성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I. 일본군‘위안부’ 개념과 범주를 둘러싼 논의 지형

1. 피해자 수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범주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둘러싼 현재 연구자, 활동가의 논의 지형은 우선 그 전체 피해 숫자를 둘러싼 이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2만에서 40만 사이를 오고가는 수의 편차는 어디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라고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말한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얽혀있는데, 창기(공창)만을 ‘위안부’로 볼 것인가, 창기를 ‘위안부’ 범주에서 제외할 것인가, 일정기간 특정 장소에서 군인의 ‘성적 위안’을 강요당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군대의 목인 하에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자행했던 성폭력의 피해자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위안소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병사의 강간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로서 인식해도 좋은가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우익 역사학자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위안부’를 일단 공창만으로 본다. 일본의 공창제가 전쟁 지역으로 옮겨온 사례가 일본군‘위안부’ 제도이고, 이 때문에 일본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거부장적 논리이다. 일본 공창제 하의 창기들이 위안소의 ‘위안부’가 되었다는 주장으로, 따라서 강제동원은 없었고 그 수는 2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곧 평상시 공창의 수는 약 20만 명인데, 이들은 1인당 ‘유객(遊客)’ 약 150명을 접했다고 한다. 이를 참고하여 해외 파견 일본군의 수를 250만 명으로 잡아 150명으로 나누면 1만 6천이라는 수가 나온다. 이를 통해 추산했을 때 ‘협정의 위안부’는 많아도 2만 명 전후라는 계산이다. 공창 이외의 여성을 포함한 ‘광의의 위안부’를 추산해도 2만 수 천 명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²⁾.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일본군 위안소의 유형에 대해 정의하면서 첫째, 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 둘째는 민간업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군 전용 위안소, 셋째는 민간의 유곽 등을 군이 일시적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³⁾.

앞의 두 가지 유형은 군의 개입이 비교적 뚜렷한, 이른바 전형적인 위안소 형태이지만 세 번째 유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 유곽과 비지정 유곽을 어떻게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비지정 유곽에 일본군이 공공연히 드나들 수 있었다면 이를 위안소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지정유곽의 창기는 ‘위안부’이고 비지정유곽의 창기는 ‘위안부’가 아닌가. 정의를 넘어서 과거 실태 문제로 들어가면 일본군의 ‘지정’이라는 명령을 넘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야하는 필요가 생긴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위안소 유형 분류가 내포하고 있는 쟁점과는 거리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 수를 추정했다. 그 근거는 1939년에 제21군에서 병사 100명에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온 긴바라 세츠조의 기록⁴⁾과 당시 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던 ‘니(2)구(9)이치(1)’, 곧 병사 29명에 ‘위안부’ 1명이 적당한 비율이라는 말이다. ‘위안부’의 교체율은 최소 1.5, 최대 2로 잡았다. 해외 일본군 수를 평균 300만 명이라고 볼 때, ‘위안부’ 수는 최소 약 5만 명(≒300만/100×1.5), 최대 약 20만 명(≒300만/30×2)이 된다⁵⁾.

중국의 학자인 천리페이(陳麗菲)와 수즈량(蘇智良)은 ‘위안부’ 20만

-
- 2)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選書, 406쪽. 해외 일본군 수를 250만 명으로 추산했다.
 - 3)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남상구 옮김, 2013,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쪽.
 - 4) 秦原節三, 1939, 『陸軍省業務日誌摘録』 前篇 其一のイ.
 - 5)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1998, 이규태 옮김,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90~92쪽(원서는 吉見義明, 1995,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90~92쪽. 해외 일본군 수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병사 29명은 30명으로 계산했다.

설은 1990년대 후반에야 피해실태가 드러난 중국 지역의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 반박했다. 그리고 중국 지역 전역에 분포했던 위안소의 엄청난 수와 중국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당한 성폭력, 학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수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중국 조사와 연구를 고려했을 때 ‘위안부’의 교체율은 3.5에서 4.0이며, 이로 미루어 ‘위안부’ 수는 최소 36만(=300만/29×3.5)에서 최대 41만(=300만/29×4) 명이 라는 것이다⁶⁾. 그리고 이러한 숫자가 각국의 관련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일본군 ‘위안부’ 수 8만에서 20만 명을 일반적인 피해자 규모로 인식해왔다. 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서울신문』 1970년 8월 15일자 기사로서 1943년부터 종전까지 5만에서 7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추계했다⁷⁾. 이후 『동아일보』는 1979년 9월 21자 기사에서 아마타니 테츠오(山谷哲夫) 감독의 다큐멘터리 「오키나와의 할머니, 증언 중군위안부(沖繩のハルモニ 証言・從軍慰安婦)」가 일본 여러 도시에서 상영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하면서 추정되고 있는 ‘위안부’ 숫자는 7만에서 20만 명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8만에서 20만 명 ‘위안부’ 숫자 추정의 원형은 197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위안부’의 역사상(歷史像)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은 1973년과 1974년에 센다 가코(千田夏光)가 쓴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와 1976년에 김일면이 출간한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위안부』이다. 전자는 1977년에, 후자는 1981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⁸⁾.

-
- 6) 陳麗菲·蘇智良, 2005, 『朝鮮「慰安婦」撲滅心和她的姊妹們 追索』, 時代國際出版有限公司, 17~20쪽.
 - 7) 義兵問題研究所 編, 1977, 『忿怒의 季節』, 訓福文化社, 1977, 81쪽. ‘니구이치(29)’ 설을 채용해 계산했다.
 - 8) 義兵問題研究所 編, 위의 책. 센다 가코의 책 전체가 번역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센다는 1941년 7월 관동군 특별 연습 때 병사 75만 명을 대상으로 조선인 ‘위안부’ 2만 명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이로 미루어 해외 지역 육군 수 320만 명에 대해 ‘위안부’ 8만 4천명을 두었을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일본육군의 전체 병력은 약 555만이지만, 일본 본토의 군대에는 ‘위안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의 병력 235만 명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했다⁹⁾. 김일면은 군인 29명대 ‘위안부’ 1명의 비율로 ‘위안부’ 동원이 계획되었으며, 이로 인해 끌려간 ‘한국인 처녀 수’가 대략 17만에서 20만이었다고 했다¹⁰⁾. 더 이상의 근거 제시는 없다. 결국 이들의 책을 통해 8만에서 20만설이 시작되고, 뒤의 요시미 요시아키의 주장이 더해져 ‘위안부’ 피해자 최대 20만설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5만에서 20만 명 ‘위안부’ 수를 추측했던 요시미 요시아키는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의 주장에 덧붙여 8만에서 20만 명 숫자 추측을 했다. 일정기간의 감금과 강간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8만 명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는 일정기간의 지속적 성폭력 피해자까지 ‘위안부’로 파악하는 인식이다.

피해자 수 논의를 통해 현재 ‘위안부’라는 명명 뒤에는 위안소의 전형적인 ‘위안부’는 물론, 일본군에 의한 강간피해자, 지정 유곽(위안소)의 창기, 일반 유곽의 창기가 서로 뒤섞여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간

조선인 ‘위안부’와 관계된 부분이 발췌, 번역되었다. 임종국 편역, 『정신대』, 1981. 일월서각. 이 책은 1992년에 김정면 지음, 임종국 옮김, 『정신대』, 일월서각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원저는 金一勉, 1976,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으로 번역 본에 김정면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저작자는 김일면이다.

9) 千田夏光, 1978, 『從軍慰安婦 正編』, 三一書房, 167쪽. 이 책은 1973년과 1974년 双葉社에서 냈던 것을 1978년에 三一書房에서 正編과 續編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10) 김정면 지음, 임종국 옮김, 앞의 책, 89쪽.

11)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2007,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위탁 연구 최종보고서, 18쪽.

피해자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 관리’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을 놓칠 염려가 있고, 지정 유곽의 창기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지정 유곽의 창기들이 군인을 상대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하타 이쿠히코의 주장과 같이 ‘위안부’는 일반 유곽의 창기를 가리키고 그 때문에 일본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위안부’ 문제에 내포된 국가의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몰역사적이며 반여성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 공창제 하의 창기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인신매매 문제나 국제법 위반 문제, 업주 및 ‘유객’의 폭력행사와 인권 억압 문제에서 빚겨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피해자 정의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수를 둘러싼 인식 차이는 결국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의 인식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각각의 ‘위안부’ 정의에 따라 그 수를 추산했기 때문이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군‘위안부’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전지·점령지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에서 군인, 군속의 성 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이라고 정의했다¹²⁾. 이러한 정의는 현재 일본 내의 활동단체, 운동가들이 따르고 있는 견해로서,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위안부’문제의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온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 센터와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VAWW RAC)가 중심이 되어 2013년 1월에 문을 연 일본군‘위안부’문제 웹 사이트”인 ‘과이트 포 저스티스 일본군‘위안부’ 망각에 대한 저항·미래의 책

12)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남상구 옮김, 앞의 책, 20~21쪽.

임’에서도 요시미 요시아키의 ‘위안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¹³⁾. 요시미 요시아키는 더불어 세 가지 위안소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군의 비지정 유곽에서 병사를 상대해야했던 여성들을 ‘위안부’ 피해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윤명숙은 군 ‘위안부’에 대해 정의하기보다 군위안소제도 차원에서 ‘위안부’문제에 접근했다¹⁴⁾. 곧 전시 일본군의 성폭력 형태는 ① 군위안소에 부녀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매일 강간을 행한 형태 ② 중국 산시성의 경우와 같이 일본군이 일정기간, 일정장소에서 여성을 강간한 형태 ③ 전시의 일시적 강간 형태인데, 이 중 군위안소 제도는 첫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범한 전쟁범죄라는 제도의 성격이 가장 뚜렷한 경우이며, 따라서 일본정부는 군위안소제도에 국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셋째의 병사 성폭력의 경우나 군대 주변의 상업적 성매매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숙은 ‘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군위안소에 구속되어 강간을 당한 여성’을 ‘위안부’ 범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의 연구자 주더란(朱德蘭)은 ‘위안부’란 1930, 40년대 아시아에서 ‘일본군 전용 창기’가 되었던 여성들이라고 정의하고 그 추정 수는 40만이라고 제시했다¹⁵⁾. 군이 위안소라는 말을 피하면서 ‘위안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타이완에서 성적 시설이 아닌 의미로 군위안소라는 말이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곧 1938년 타이완 핑둥시(屏東市)에서 군인위안소가 건설되었는데, 벽돌과 목조의 2개 건물로

13) 화이트포저스티스 홈페이지(<http://fightforjustice>)

14)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이학사, 26~27쪽, 90~91쪽.

15) 朱德蘭, 2005, 『台湾總督府と慰安婦』, 明石書店, 13쪽.

건축된 이 위안소는 대식당, 목욕탕과 홀을 갖추고 바둑과 당구 등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휴게오락시설이었다. 평일에는 일반에게 개방하여 식료 판매 등을 하고 일요일에만 군인 전용의 위안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반면 타이완 지역에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지목하는 위안소는 고급요리점, 개축 교실, 개축 민가, 오지 군사시설 내의 동굴 등이었다¹⁶⁾.

당시 위안소라 불린 곳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위안소가 아닌 사례는 타이완 이외의 지역에서도 있었다. 1938년 6월 일본 오이타(大分) 벳부시(別府市)의 상공회의소 의원이자 요정(料亭) 주인 다카기시(高岸源太郎)가 시내 간나와(鐵輪) 온천에 육군위안소를 두고 큰 온천 풀과 휴게소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다¹⁷⁾. 공창제가 유지된 오이타현에서 요정이나 온천에서 여성이 ‘성적 위안’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설혹 예기(藝妓)가 사창(私娼)으로서 이 육군위안소에 출입했다 해도, 이 여성을 ‘위안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들은 자료상에 위안소라 표기된 업소나 시설이 군인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소였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그 위안소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연구자 천리페이와 수즈량은 ‘위안부’는 일본 군인에게 ‘성 복무(性服務)’를 제공하도록 강요되어 성노예로 충당된 부녀를 가리킨다고 말했다¹⁸⁾. 역시 굳이 위안소라는 말을 뺀 것은 세상에 드러난 중국인 피해자 가운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성폭력을 겪었던 여성들이 많은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일정장소에서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중국인 피해자 4명은 1995년과 1996년(이때는 그중 2명)에 중국인 ‘위안부’라는 명명으로도쿄지방법판소에 소송을 하기도 했다. 이 재판을 지원했던 일본인 연구

16) 위의 책, 97~99쪽.

17) 「こんどは陸軍慰安所」, 『大阪毎日新聞 西部版-大分』, 1938. 6. 28.

18) 陳麗菲, 蘇智良, 앞의 책, 5쪽.

자, 법조인, 활동가들은 이들이 성폭력을 당한 곳을 ‘강간소’라고 호명했다. 2004년 도쿄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일본군이] 주둔지 근처에 사는 중국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납치, 연행하여 강간하고 감금상태로써 매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이른바 위안부 상태로 한 사건”¹⁹⁾이라고 인식했다. ‘이른바 위안부’라는 명명으로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로 본 것이다.

한편 중국의 산시성(山西省)과 하이난다오(海南島)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라는 명명으로 1998년과 2001년에 일본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일정기간 감금되어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한중일 언론을 통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로서 소개되었다. 요시미 요시아키와 윤명숙이 일본군 ‘위안부’로서 범주에 넣지 않은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동북아역사재단, 정대협이 정의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일본이 만주사변(1931. 9. 18)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²⁰⁾,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이래 일본 육해군이 창설, 관리한 군위안소에 상당 기간 구속된 채 군인·군속 상대의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여성”²¹⁾,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위안소’를 설립하여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하여 성노예로 만든 범죄”²²⁾ 등으로 정의한다.

19) 女性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2008, 「ある日, 日本軍がやってきた 一中国戦場での強かんと慰安所」, 女性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35쪽.

20)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 (<http://www.hermuseum.go.kr/>)

21)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동북아역사이슈 (<http://www.nahf.or.kr/>)

22) 정대협 홈페이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https://www.womenandwar.net/>)

여성가족부는 ‘강제동원’을 가장 강조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군의 개입을 강조하며, 정대협은 제도적인 군위안소를 강조했다. 정대협의 정의에서 일본에서 동원된 여성들을 제외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기관, 단체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위안부’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정부는 ‘위안부’라는 말에 소위(いわゆる)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1993년 8월 4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킨 문제”라고 얘기하였다. 고노담화에 따라 정부 출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 또한 그 홈페이지에서 “이른바 ‘중군위안부’란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일정 기간 일본군의 위안소 등에 모집되어 장병에게 성적인 봉사를 강요당하였던 여성들”²³⁾이라고 정의하였다. 군위안소의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점령지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아우르고 이른바 ‘위안부’라는 말로써 범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기금은 한국, 타이완,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의 피해자를 그 지급대상으로 삼으면서 일본군 주둔지 건물에 감금되어 일정기간 강간을 당한 경우도 ‘위안부’ 피해자로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1996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안부’보다는 ‘군성노예제’가 더욱 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에 성노예라는 개념이 더욱 폭넓게 쓰이고 있다. 1998년에는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특별보고관이 ‘위안부’제도를 ‘강간 센터(rape center)에서 이루어진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 중에서도 더

23)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홈페이지 (<http://www.awf.or.jp/k1/>)

육 가혹한 성폭력 행태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전시하 여성인권 침해의 사례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한국의 운동단체들도 국제연대를 통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전시하 보편적인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로 인식해가기 시작했다²⁴⁾.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특수성이 흐려지고 보편적인 성폭력 피해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의 관계기관 및 연구자의 경우, 자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특성을 중심으로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행정 자료 및 군 문서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전체상을 설명하려는 일본의 경우, 문서상에 드러난 위안소 및 ‘위안부’의 성격에 주목한다.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은 연구수준을 압도하면서 ‘보편적인 여성인권 침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전지구적 연대를 확산해나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성격은 ‘전시 성노예’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정작 피해실태에 근거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상은 합의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혼란을 넘어서는 방식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전쟁과 여성인권이라는 외피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살, 과거실태로부터 비롯되는 그 특수한 역사적 성격은 무엇일까. 이로 미루어볼 때 일본군‘위안부’는 누구인가. 다음 장은 이러한 의문들을 돌아보기 위한 시도이다.

24) 정진성, 2003,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2, 46~47쪽; 정진성, 2015,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해, 그 책임의 방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 광복 7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24~25쪽.

II. 일본군의 전쟁 수행과 병사에 대한 ‘성육’ 통제

1. 일본병사의 군기 해이와 일본군의 대응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필요성은 병사의 군기 해이에 대한 일본군의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전쟁 수행 기간 중 일본군대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불량했다고 한다. 1940년 중국 동북지역을 시찰한 미키 요시히데(三木良英) 육군성 의무국장은 5월 11일 다음과 같은 ‘시찰소견’을 보였다.

제일선의 생활

제지(在支) 부대에서 일반적으로 불량함. 정신적 위안, 물자 공급에 대해 고려를 요함. 부대장 말에 따르면 원인불명의 도망, 폭행이 잇따르는 것은 정신적 안정이 없기 때문이라 함. 도이하라(土肥原) 사단장은 위안단 파견을 요구함. 국경수비대에는 3년간 한 사람도 외출하는 자가 없다 함. 홀병부(恤兵部)에 독촉할 것을 요함²⁵⁾

이에 앞서 1939년 5월에 육군성 병무국장 나카무라 아케토(中村明人)가 “군기 진작에 관해서 관동군은 일반적으로 최근 양호해져 군기 위반 사례가 적음”, “북중남지군에서는 여전히 군기사범이 끊이지 않음”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²⁶⁾. 최근 양호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1년 뒤인 1940년 5월에 관동군의 생활은 도망과 폭행이 잇따르는 ‘일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병사의 이러한 ‘불량’ 상황에 대해 일본군은 그 원인을 일차적으로 전

25) 金原節三,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40. 2-5(鈴木裕子, 山下英愛, 外村大 編, 2006, 『日本軍』慰安婦, 關係資料集成 (上)』, 明石書店, 242쪽).

26) 金原節三,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39. 6~9(위의 책, 146쪽).

장 생활에 따르는 정신의 문제로서 파악하였다. “전장생활은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자극이나 충동이 출정병사에게 가해지고 또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마침내 정신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²⁷⁾. 그리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과도한 정신 긴장은 정신 기능을 피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마치 오랫동안 당긴 현악기의 줄이 끊어지기 쉬운 것처럼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이 위험을 일으켜 범죄 빈발의 원인”²⁸⁾이 된다는 것이다.

하야오 도라오(早尾扁雄) 군의관은 1939년의 글에서 병사의 심신을 지배하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22개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등화관제, 세균전, 독물(毒物) 투입 및 주입, 독가스, 폭격 따위였는데, 그 가운데 17번째 문제로 다룬 것이 성욕과 강간이었다. 이 부분에서 하야오는 위안소가 개설된 이유가 일본육군 병참이 장병의 성욕을 오랫동안 억제시켜 중국인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병사의 강간 사례를 열 가지 소개했다. 그리고 본인은 전장 생활 1년 내내 일본군인이 어째서 성욕 앞에서 이성을 지키지 못하는지 통감했다고 한탄하며 군 당국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장생활은 무미건조하여 성질이 거칠어지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병사에게 여자를 안기는 것보다 좋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²⁹⁾.

이상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군은 도망, 폭행, 강간 등 병사의 군기 위반 문제를 일본군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을 치르는 어느 부대나 겪는 정신의 문제이며, 그 정신을 좌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7) 早尾扁雄, 1939, 「戰場に於ける特殊現象と其對策」 1939. 6, 1쪽(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編 1997, 『政府調査「從軍慰安婦」資料集成②』, 龍溪書舎, 55쪽).

28) 早尾扁雄, 1938, 「戰場神經症並二犯罪二就イテ」 1938. 4, 緒言(高崎隆治 編・解説, 『軍医官の戰場報告意見集』, 不二出版, 1990).

29) 早尾扁雄, 1939, 「戰場に於ける特殊現象と其對策」 1939. 6.

서 병사의 ‘성욕’³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곧 오랜 진장 생활에서 병사의 ‘성욕’은 억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병사가 거칠어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데, 이는 남성의 성은 여성과의 성교를 통해서 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가부장적 성의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군기의 문제를 인간(남성)의 본성 차원에서 파악하고 그 대응책으로서 정신을 특히 강조한 것은 근대 일본 군대의 특징이었다. 일본군이 규율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절대 복종의 강요와 정신주의의 강조였다³¹⁾. 군기는 엄격한 규칙과 훈련, 그리고 징벌에 따라 유지하려고 했으며, 준엄한 내무생활의 강조는 폭행을 기본으로 한 고참병이 가하는 사적제제를 공인했다. 군 당국은 고참병의 사적 제제를 방임함으로써 신병을 일깨우는 기제로 균일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세뇌를 가했던 것이다³²⁾.

이를 통해 일본군은 일본군대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점, 곧 병사 인권에 대한 극단적인 억압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다. 내무생활은 긴장으로 차 있었으며 군대의 생활 편리 시설은 극히 빈약했다. 휴가도 거의 없었다. 서양의 군대는 일정 기간의 휴가를 주고 있었지만, 일본군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육해군 전부가 전쟁 시에 휴가를 주지 않았다³³⁾.

병사의 군기 위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1939년에 아소 테츠오(麻生徹男) 군의관은 군위안소와는 다른 별개의 위안시설이나 음악, 영화, 도서, 스포츠 등의 오락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³⁴⁾. 하야오 도라오 군의관 또한 정신장애가 생긴 병

30) 본 글에서 인용되는 병사의 ‘성욕’은 ‘여성과의 성교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폭력, 강간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남성의 성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따옴표를 둘러 사용한다.

31)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앞의 책, 223~224쪽.

32) 위의 책, 224쪽.

33)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이규태 옮김, 앞의 책, 64~65쪽.

34) 위의 책, 64쪽.

사에 대한 조치로서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 조정 및 배려, 충분한 휴양, 음주 엄금과 만취 병사 감시 외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군부는 이러한 의견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³⁵⁾. 일본군이 주목했던 것은 과잉해석된 병사들의 ‘성욕’ 문제였다. 앞에서 하야오 도라오 군의관이 지적한 대로 ‘병사의 성질이 거칠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안기는 것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시행되었다.

2. 일본군의 ‘성욕’ 통제와 일본군 ‘위안부’

1) 군위안소 설치

일본군은 ‘병사의 성적 위안’이라는 구실로 군 ‘위안부’ 제도를 시행했다. 육군성은 1940년 9월 ‘군기 진작대책’을 내놓으면서 “특히 성적 위안소에서 받는 병사들의 정신적 영향은 가장 솔직하고 심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의 적합 여부는 사기 진흥, 군기 유지, 범죄 및 성병의 예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³⁶⁾.

특종 위안소 개설 취지는 장병의 살벌한 기풍을 온화하게 조절하고 이로써 군기 진작에 일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것이 장려 또는 선전으로 타락하는 행위를 엄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³⁷⁾.

35)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앞의 책, 241쪽.

36) 陸軍省, 1940, 「支那事変ノ經驗ヨリ觀タル 軍紀振作對策」, 1940. 9. 19(鈴木裕子, 山下英愛, 外村大 編, 앞의 책, 247~251쪽).

37) 獨立山砲兵第三連隊, 「森川部隊特種慰安業務に關する規定」, 1939. 11. 14.

이 자료를 분석한 요시미 요시아키에 따르면 독립산포병 제3연대의 위안소 개설 목표는 오로지 성교 기회의 제공을 통한 장병 기풍의 조절에 있었다고 한다.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간 사건도 성병 감염도 있을 수 없는 최전선에도 군위안소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 위안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본군이 위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병사에게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³⁸⁾.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일본군의 시스템이었다. 미군은 1944년에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들을 포로로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 보고서를 써냈는데, 여기에서 “‘위안부 (comfort girl)’라는 용어는 일본인 특유의 것이다. 다른 보고들도 일본군이 전투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나 ‘위안부’가 발견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⁹⁾. ‘위안부’라는 용어 속의 ‘위안’ 대상은 ‘위안부’가 아니라 병사이다. 곧 일본군이 전투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나 ‘위안부’가 발견됐다는 말은 ‘위안부’가 일본군의 전투를 돕는 존재로 이용됐다는 당대의 인식을 드러낸다. 전쟁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위안부’라는 존재를 창출한 당시 일본군의 의도를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병사의 여성 강간 은폐 및 조장

군위안소는 일본군의 직간접 관리 하에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부’의 동원과 이송, 군위안소의 운영에 관여했다. 요시미 요시아키가 정리한 이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설치 배경으로는 ①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강간

38)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이규태 옮김, 앞의 책, 64쪽.

39)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1944,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49”, 1944. 10.

사건 방지 ② 병사의 성병 예방 ③ 병사에게 ‘위안’ 제공 ④ 군 기밀 유지라는 네 가지가 통용되고 있다⁴⁰⁾.

이 중 강간방지라는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군기 위반 억제라는 취지에 해당한다. 이때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 ‘강간방지’를 위한 군위안소 설치라는 취지가 ‘일반 여성에 대한 정조 보호’⁴¹⁾ 차원보다도 점령지의 반일 감정 억제를 통한 일본군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가 1938년 6월 27일 각 군대에 내린 통첩은 이러한 의식을 잘 보여준다. 병사의 강간 행위는 “군 전반의 작전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국가에 누를 끼치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다.

강렬한 반일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각지에서 일본 군인이 강간 사건을 전체적으로 만연시켜 실로 예상외의 심각한 반일 감정을 조성시킨 데 있다. … 원래 산둥, 하남, 하북 남부 등에 있는 홍창회(紅槍會), 대도회(大刀會)나 이와 유사한 지위단체는 예로부터 군대의 약탈, 강간 행위에 대한 반항이 치열하다. 특히 강간에 대해서는 각지의 주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보복하는 것이 관례이다. … 따라서 각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간은 단순한 형법상의 죄악에 머물지 않고 치안을 혼

40)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앞의 책, 188쪽.

41) ‘일반 여성에 대한 정조 보호’ 문제는 필요악으로서의 공창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언젠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공창이라는 남성의 합법적인 성 배출 공간을 뒤편으로써 ‘일반 여성의 정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유곽을 둔 이래, 메이지 유신 이후 이것을 근대적으로 재편하여 공창제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관리했던 나라다. 공창 폐지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일본정부는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날 위험 등을 거론하며 공창을 옹호했다. 곧 공창제는 일본의 근대 여성규범이었던 양치현모주주의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점령지의 현지 여성은 내셔널리즘에 갇힌 가부장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여성에서 제외되는 존재였다. 따라서 점령지 현지 여성의 강간 문제는 ‘여성 보호’라는 본국에서의 성범죄 단속 취지는 한층 약화된 채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주제이다.

란하게 하여 군 전반의 작전 행동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에 누를 끼치는 중대한 반역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러한 행위의 발생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성적 위안 시설을 만들어, 설비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²⁾.

위의 통첩에서 강간엄금을 공포하고 그 대책으로 군위안소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일본군 장교의 인식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군이 병사의 강간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린 것도 아니었다. 강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오카베 나오사부로도 병사의 강간 문제는 ‘본의 아니게 범하는 죄’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다.

병사의 강간은 일본 육군 형법 제9장에 ‘강탈 내지 강간의 죄’로 다루어지면서 무기(無期) 또는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다(1932년 개정). 그러나 전쟁 중에는 부대장이 “병사의 기운을 북돋는데 오히려 필요하다 하여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일마저 있었을 정도”⁴³⁾였다고 한다. 중일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성범죄가 집중되었던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이나 산시성에서는 부대 단위로 2인 이상의 병사 그룹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강간하거나 율간한 사례가 자주 보인다⁴⁴⁾. 부대 단위가 집단적으로 육군 형법을 위반하고도 법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군대의 조직적인 묵인 차원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당시 운 좋게 단죄를 피했던 군대의 일탈 행위로 봐야할까. 가사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는 병사의 살인이나 강간이 ‘쾌감’을 불러일으켜

42) 岡部直三郎(北支那方面軍參謀長), 1938, 『軍人軍隊ノ對住民行爲ニ關スル注意ノ付通牒』, 1938. 6. 27(鈴木裕子, 山下英愛, 外村大 編, 앞의 책, 109~110쪽).

43) 早尾昶雄, 1939, 앞의 글.

44) 笠原十九司, 1996, 『中國戰線における日本軍の性犯罪—河北省·山西省の事例』,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13號,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9쪽.

전쟁의 고통과 공포를 초월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⁴⁵⁾, 이에 따르면 일본군은 병사의 강간을 묵인하여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도모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일까.

점령지에서는 병사가 여성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마을로 돌아가 피해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 그 여성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한국인 옛 일본해군 동원자의 증언도 있다⁴⁶⁾. 이처럼 일본군이 염려했던 것은 병사의 강간 자체보다는 강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었다. 점령지 주민의 반일 행동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일본 헌병에게 호소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증거를 은멸하려는 심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해버리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⁴⁷⁾. 그리고 부대 내에서 고참병과 상등병을 중심으로 자신의 강간행위를 자랑하는 대화가 일상적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성범죄 행위를 부추겼다고 한다⁴⁸⁾. 하야오 도라오 군의관 또한 강간이 군대 내에서 유행하는 중에 “굳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수양이 두터움을 말해주는 것”⁴⁹⁾이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병사의 강간은 일탈적 행위라 아니라 일상이었으며, 군대의 묵인 하에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일본군에 의한 강간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간극은 종이 한 장 차이였음을 가늠하게 한다.

그렇다고 전시 강간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서 범주화할 수 있을까. 이들은 병사의 ‘성적 위안’ 대상으로서 전쟁 수행을 위해 도구화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45) 위의 논문, 11쪽.

46) 장수지·박정애 면담, 정봉연 구술, 2007, 「해남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실태연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결과보고서, 67쪽.

47) 笠原十九司, 앞의 논문, 10쪽.

48) 위의 논문, 11쪽.

49) 早尾扇雄, 1938, 앞의 보고서(위의 논문, 11쪽에서 재인용).

말할 때는 ‘조직적, 체계적’으로 동원, 이송, 관리되었다는 측면, 이러한 방식의 성노예 관리가 당시 일본군의 특이한 시스템이었다는 당대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넘어서서 일본군‘위안부’의 외연을 확장해버린다면, 일본의 가해책임 또한 흐릿해질 위험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범주 하에 전시 성폭력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전시 성폭력 문제를 나란히 내세워 일본의 전쟁범죄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제국 일본 내의 유곽 이용

마지막으로 전쟁 시 제국 일본, 곧 일본 본토, 식민지, 조차지, 위임통치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관리 성매매 제도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말할 때 공창제와의 차이점이 자주 언급된다. 유곽의 창기 등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인식인데, 일본군‘위안부’는 당시의 공창이어서 일본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일본 우익의 논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사 연구 및 진상 규명을 앞질러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1990년대 이후 공창제도와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했던 연구들은 제도화를 통해 국가권력이 허가한 틀 안에서 두 제도 모두 여성에 대한 인권 억압과 남성에 대한 성 통제를 실천했다고 지적했다⁵⁰⁾. 반면 일본의 근대화 기획에 충실하게 짜여졌던 공창제를 옹호하는 입장은 속도전과 민족, 계급, 젠더 차별을 통해 부국강병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병사와 도시 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던 근대 공창제의 등장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했다⁵¹⁾. 공창제도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각각 별

50) 藤目ゆき, 1997, 「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 『季刊 戦争責任研究』18, 日本の戦争責任センター; 宋連玉, 2000, 「公娼制度から「慰安婦」制度への歴史展開」, 『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第3巻』, 緑風出版

개의 주제로 고찰한 후 이들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들이다.

반면 뚜렷한 공론화의 대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쟁 중 조선이나 일본 본토, 그리고 이른바 만주 지역의 유곽이나 이곳에 끌려갔던 여성을 군위안소 혹은 일본군 ‘위안부’로 이해하고 있는 인식 또한 분명히 있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중국 ‘위안부’ 자료관에는 군위안소 지역으로서 1930년대의 다롄(大連) 오사카쵸(逢坂町) 지역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⁵²). 이 지역은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군의 조차지가 된 지역으로서, 일본이 1905년 12월에 관동주 민정서 고시 제38호를 공포하여 공창지역으로 삼은 곳이다⁵³). 곧 재중국 일본영사관이 관리하고 있었던 유곽을 중국의 자료관에서는 군위안소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두리는 1943년 9월에 부산 영도에 있는 제1위안소에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일본 군인이 하루 3~40명씩 왔으며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군인이 더욱 많이 왔다고 했는데, 그 외의 피해내용을 살펴봐도 위안소 생활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⁵⁴). 윤두리는 1997년에 상영된 다큐멘터리 『낮은목소리2』(감독 변영주)에 출연하여 본인이 끌려갔던 부산 영도 지역의 위안소를 지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근거로 하여 위안소를 추적해보면 식민지 시기의 부산 마키시마(牧島) 유곽

51) 秦郁彦, 앞의 논문, 27~57쪽.
52)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일본군 ‘위안부’ 역사콘텐츠 현황분석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여성부, 45쪽.
53) 藤永壯, 1998, 「日露戦争と日本による『満州』への公娼制度移植」, 『快樂と規制 近代における娯樂の行方』, 大阪産業大學産業研究所.(후지나가 다케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을 인용했다 <http://www.dce.osaka-sandai.ac.jp/>).
54) 윤두리 구술, 안연선 면담, 1993, 「우리집을 지척에 두고 위안소에 갇혀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I』, 한울, 289~296쪽.

지역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물론 이곳이 이 지역 유곽들 가운데 일본군이 위안소로 지정했던 유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 공창제 하의 유곽이 사회 풍기 유지와 ‘유객’의 성병 예방을 위해 일본 경찰의 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군이 유곽들을 굳이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하고 병사의 이용을 통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청진의 정어리 공장에 노동동원을 갔었던 최○○는 평일에는 민간인들이 청진 유곽에 갈 수 있었는데, 주말에는 군인들이 많이 나와서 민간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고 구술했다. “개들은 병원에서 다 검사해서 다 소독하고 그래”서 감염 걱정은 없었다고 한다⁵⁵⁾. 타이완을 경유해 중국 하이난다오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해군지원병 1기생 이서근도 1944년 타이완 가오슝(高雄)에서 1주일간 머물 당시 군인들이 현지의 유곽을 이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현지인들은 눈에 안 띠었고 “군인 천지”였기 때문에 위안소라고 할 만하고 언급했다. 군대에서도 특별히 업소를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잘못하면 항일게릴라의 기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업소를 지정했다고 한다⁵⁶⁾.

제국 일본의 성매매 관리 지역은 일본 내무성이나 총독부 내무국, 현재 영사관에 소속된 각각의 경찰이 접객여성 등록, 성병 검진, 영업세 등의 세금, 업자와 ‘유객’ 등을 감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 시기의 접객업 변동 사항이다. 1938년 이후 총동원체제에 들어서면서 제국 일본의 접객업은 전쟁 수행을 위해 재편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전시기에 접객업을 유흥업이라 부르면서 영업통제와 증세 정책을 통해 이를 억제하려 했으며, 경쟁력 없는 접객업들은 전폐업(轉廢業)의 대상이 되었다. 접객업의 ‘유흥적 요소’는 비판을 받았고, 접객업에 고용되어 있던 접객여성이나 고용인 등은 전시 인력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그

55) 최○○ 구술, 박정에 면담, 최○○ 자택, 2006. 12. 28.

56) 이서근 구술, 박정에 면담, 신촌 민들레 영토, 2008. 5. 17.

결과 1930년대 초중반 사창의 위세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공창 영업은 1938년 이후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쟁기를 맞아 군인 이용객이 늘어난 유곽들은 영업시간을 최대한 배려 받는 등 일제 권력의 상대적인 옹호 정책 속에 있었다. 군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유곽의 매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군대의 숙영기간 중에는 특히 상당한 매상을 올렸다고 한다⁵⁷⁾. 곧 전시체제가 일본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경쟁력 없는 접객업은 전폐업시킨다는 유흥업 통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전시에 증가된 군인을 위한 유곽이 전폐업 대상에서 빠져나가면서 성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 시기 공창은 전시 체제에 맞게 재편이 되면서, 이전의 공창 성격에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⁵⁸⁾.

물론 쟁점을 버리기 위해 밝혀내야 할 역사적 사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평상시 일본정부가 관리했던 성매매 시스템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이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창제 하의 유곽이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 수행을 위해 이전의 성매매 관리 제도가 재편이 되었다면 이시기 유곽에서 자유를 빼앗겼던 창기들을 ‘위안부’ 피해자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57) 京畿道, 1938, 「支那事變關係一事變下二於ケル經濟界ノ諸情勢」, 『治安狀況』, 京畿道, 1938. 9.

58) 박경애, 2009, 「충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7호, 191~222쪽.

맺음말

정진성은 국제연대의 필요성에서 세계여성운동의 흐름에 함께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담론이 과잉되고, 역사성이 빠진 ‘위안부’문제 인식이 넘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⁵⁹⁾.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특수성은 하나의 제도로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의 운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있으며, 식민지 여성에 대한 동원 없이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방향은 그 실제의 역사적 맥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⁰⁾.

본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또한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는 과거 실태에서부터 맥락을 따져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진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진성의 주장은 장기간 군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민지 여성의 강제동원문제에 주목해서 나온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현지의 유곽을 군위안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사실이나 현지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강간 사례가 의미하는 역사적 맥락 따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전쟁 책임 및 식민지 지배책임의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범죄로서의 일본군‘위안부’제도라는 개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는 1987년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성폭력 문제를 개인이 일탈적으로 겪

59) 정진성, 2015 앞의 논문, 24~25쪽.

60) 위의 논문, 22~26쪽.

는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이 자리를 잡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불어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회공감대도 확장되어갔기 때문에 국가 범죄로서의 ‘위안부’ 인식이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군 허가 ‘성적 위안시설’ -현재 군위안소라고 범주화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했던 병사들 사이에서 ‘위안부’ 보다 더욱 익숙했던 말은 창기, 작부, 피(比, P), 예기, 매춘부, 창부, 낭자군 등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는 새롭게 정의된 ‘위안부’라는 개념으로 이들을 포괄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과거 맥락을 건어버리고 현재의 관점만으로 개념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개입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위안부’ 피해는 부정할 수 없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특수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는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를 촉발시킨다는 의미에서 무리하게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설정 시도를 하면,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새롭게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나 전시체제 하에서 새롭게 재편되어 활용된 제국 일본 지역의 관리 성매매 시설 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의 범주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적으로 볼 때 전쟁터 및 점령지뿐만 아니라 전시체제가 일본 본국 및 식민지의 관리 성매매 시설의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전시체제가 관리 성매매 시설들은 전폐업을 강요당하면서 전쟁에 활용될 목적으로 재편되었고, 총독부 및 영사관 경찰의 감독, 관리 하에 있었으며,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받아야했다. 이시기 일본군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면서 경찰에 대해 통제를 강화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이다. ‘제도’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범죄성을 따질 때 일본정부 및 군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병사의 이용을 허가했다는 역사적 성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에 의한 전시 강간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로서 호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지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 조직적인 의도와 목인 하에서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일본군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군을 위반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전시 강간 피해자는 ‘제도화’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이들을 전쟁 피해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당시 국제법이나 일본군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였고, 일본군은 ‘전쟁상황’이라는 면피(免避)로 이를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은폐하였다. 병사의 ‘성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군부의 인식과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연하게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여성인권을 도외시했던 군대 문화가 현지 여성에 대한 병사들의 성폭력을 증폭시켰다. 따라서 전시 여성 의 강간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연동되지만 역사적 성격은 다른, 별개의 전쟁범죄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제국 일본은 대부분의 일본 본국 여성들과 식민지 일부 여성들을 ‘군국의 어머니’로서 활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 한편에는 병사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치부하면서 전쟁의 성적 도구로 이용한 일본 본국 및 식민지, 점령지의 여성들이 있었다. 일본군‘위안부’로서 ‘제도화’하여 ‘합법성’을 내세움으로써 그 범죄성을 은폐하고 있지만, 그 ‘제도’ 하에서 피해 여성들은 목숨을 잃거나 자존감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해야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이 진전된 1990년대 이래 드러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여성인권 의식이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반인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시 및 무력갈등 하의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보편적인 관점으로 성노예로서 본질화하고 문제제기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제도화’했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과거 피해실태로부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터 보는 것은 전쟁기 일본군이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서 저질렀던 성범죄의 원초적인 형태를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문제시하고 폭력성을 따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화하고 해결의 단초를 모색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이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과거 역사적 성격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こんどは陸軍慰安所」, 『大阪毎日新聞 西部版-大分』, 1938. 6. 28
- 岡部直三郎, 1938, 「軍人軍隊ノ對住民行爲ニ關スル注意ノ件通牒」, 1938. 6. 27
- 京畿道, 1938, 「支那事變關係一事變下ニ於ケル經濟界ノ諸情勢」, 『治安狀況』, 京畿道, 1938. 9.
- 高崎隆治 編・解説, 1990, 『軍医官の戰場報告意見集』, 不二出版
- 金原節三, 1939,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39. 6~9
- 金原節三, 1940,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40. 2-5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編, 1997, 『政府調査「從軍慰安婦」資料集成②』, 龍溪書舎
- 獨立山砲兵第三連隊, 1939, 「森川部隊特種慰安業務ニ關する規定」, 1939. 11. 14
-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編, 2006,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上)』, 明石書店
- 陸軍省, 1940, 「支那事變ノ經驗ヨリ觀タル 軍紀振作對策」, 1940. 9. 19
- 早尾扨雄, 1938, 「戰場神經症竝ニ犯罪ニ就イテ」 1938. 4
- 早尾扨雄, 1939, 「戰場に於ける特殊現象と其對策」 1939. 6
-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1944,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49”, 1944. 10

2. 논저

- 김정면 지음, 임중국 옮김, 1992, 『정신대』, 일월서각
- 藤目ゆき, 1997, 「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 『季刊 戦争責任研究』 18, 日本戦争責任センター

- 藤永壯, 1998, 「日露戰爭と日本による「滿州」への公娼制度移植」, 『快樂と規制 近代における娯樂の行方』, 大阪産業大學産業研究所 (<http://www.dce.osaka-sandai.ac.jp/>)
- 박정애, 2009,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혹업' 억제정책과 조선의接客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17
-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일본군 '위안부' 역사콘텐츠 현황분석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여성부
- 宋連玉, 2000, 「公娼制度から「慰安婦」制度への歴史展開」, 『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2000年女性國際戰犯法廷の記録 第3巻』, 緑風出版
-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이규태 옮김, 1998,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 윤두리 구술, 안연선 면담, 1993, 「우리집을 지척에 두고 위안소에 갇혀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I』, 한울
-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이학사
- 義兵問題研究所 編, 1977, 『忿怒의 季節』, 訓福文化社
-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2007,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 정봉연 구술, 장수지·박정애 면담, 2007, 「해남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실태연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 정진성, 2003,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2
- 정진성, 2015,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해, 그 책임의 방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 광복 7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朱德蘭, 2005, 『台灣總督府と慰安婦』, 明石書店

사학연구 제120호(2015. 12)

陳麗菲, 蘇智良, 2005, 『朝鮮「慰安婦」撲永心和她的姊妹們 追索』時代國際
出版有限公司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選書

千田夏光, 1978, 『從軍慰安婦 正編』, 三一書房

Abstract

An Essay on the Category and Concept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through Damage Status

Park, Jung Ae

This article is to set the concept and category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through a historical approach in the introductory manner. Although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issue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was raised and its problem-solving efforts were started, an agreement on the concept and category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has not been reached between researchers, activist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It is because its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s and movements developing the problem-solving movements based on rashly judged or historically biased researches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land victims taken into account and reconstructed through official documents. On top of that, the right wing forces in Japan have turned this issue into a political contest, which makes the efforts for its recognition and resolution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complex and contradicto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system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began in order to have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concept and category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To establish the military discipline of soldiers while maintaining the repressive military organization, Japanese forces was engaged in satisfying the sexual appetite of the soldiers and tried to solve it. There were three ways of reacting to it; establishment of new comfort stations, toleration of the sexual violence which the Japanese soldiers had committed in the occupied areas, and utilization of the Japanese authorities-managed prostitution facilities. From among these, the second and third cases are controversial in defining the concept and category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It is asserted in this article that priority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the historical peculiarities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issue as a 'system' in order to set up the concept and category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which is not to blu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s during the war but to examine how repressed the human right of women were and they were sexually instrumentalized frequently crossing the legal and illegal during the War in the Pacific by showing the spectrum of the wartime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the Japanese forces. It will be possible to seek the solutions in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peculiarities along with the examination of their causes in the fundamental dimensions of the wartime sexual violenc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issue of the common sexual slaves after the definition is made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facts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utilized in the framework of the permission through the regula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nd Japanese forces.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Keywords : System of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Sexual violences during the war, Sexual crimes of Japanese forces, Management of prostitution